

시의회 보고

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납부 예비비 사용 보고 〉

2021. 9.

평 생 교 육 국

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납부 예비비 사용 보고

광명시에 위치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 국유지에 대해 광명시가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납부한 것에 대해 보고드립니다

□ 사용현황

(단위:천원)

예 산 과 목			예산현액	예비비 사용요구액		변경 후 예산현액	변경일
세부사업	편 성 목	통 계 목		증	감		
예비비	예비비 (801)	예비비 (01)	85,691,974		1,250,057	84,441,917	'21.5.28.
시립 청소년 특 화 시 설 위탁운영지원	배상금등 (305)	배상금등 (01)	-	1,250,057		1,250,057	

□ 사용사유

-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 국유지에 대해 위임받은 광명시가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높은 연체율을 감안하여 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하고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음

〈변상금 부과 개요〉

- ▶ 대 상 : 국유지 2,416㎡(대지 1,525㎡, 하천·구거 891㎡) ※복지관 전체 부지 62,301㎡의 4%
- ▶ 변상금/납부일 : 1,250,057천원 / '21. 5. 31.
- ▶ 부과기간 :
 - 대 지(1,525㎡) : 1,198백만원('15.9.18.~'21.4.13.)
 - 하천·구거(891㎡) : 52백만원('18.3.21.~'21.4.16.)

※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시설 개요(폐쇄 : '17.12.31 결정)

소 재 지	규 모	운영기간	주요기능
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	- 복지관 본관 및 신관 - 임대아파트 9개동	'82.12.17 ~ '17.12.31	-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능력개발 지원 등 - 근로여성청소년 임대아파트 등

※ 해당 부지 기획재정부(한국자산관리공사)로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 : '21.7.1.

붙임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변상금 부과 대응 현황 보고

□ 근로청소년복지관 현황

- 소재지 :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 (개관 : '82.12.17, 폐쇄: '17.12.31)
- 규모 : 대지 62,301 m^2 , 총 16필지 / 복지관, 임대아파트, 운동장 등
 - 시유지(전체면적 대비 약 96%) : 59,641 m^2
 - 국유지(전체면적 대비 약 4%) : 2,660 m^2 (대지 1,525 m^2 , 하천·구거 1,135 m^2), 국토부 소유
- 현황 : 잠실운동장 내 국유재산과 교환계약 체결('21.3.26.), 소유권 이전('21.7.1.)
 - ※ 교환계약 : (국)잠실운동장 ↔ (市)광명청소년근로복지관, 강서운전면허시험장, 송파가락공영주차장

□ 광명시 변상금(사용료) 부과 및 서울시 대응 현황

- (1차 변상금) '14.12월 부과, 1,234백만원 ⇨ 행정심판(변상금 처분 취소)
 - 대지 : 1,148백만원('09.10.1.~'14.9.30.), 하천·구거 : 86백만원('10.1.1.~'14.12.31.)

구분	결과	사유
행정심판 (15.7.8.)	변상금 처분 취소	· 불법 점유 사용 아니므로, 사용료 부과 (사용료 징수만으로도 행정목적 달성 가능)

- (2차 사용료) '15.9월 부과, 1,149백만원 ⇨ 행정소송(사용료 처분 취소)
 - 대지 : 1,070백만원('10.9.18.~'15.9.17.), 하천·구거 : 79백만원('10.9.18.~'15.9.17.)

구분	결과	사유
행정소송 (17.9.14.)	사용료 처분 취소	· 사용허가 행위가 없었으므로, 사용료 처분 불가 ※ 단, 국유재산이 묵시적 무상 귀속 또는 사용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

- (3차 변상금) '18.5월 부과, 663백만원 ⇨ 행정심판(기각), 행정소송(점용요율 조정)
 - 대지 : 617백만원('15.9.18.~'18.3.20.), 하천·구거 : 46백만원('15.9.18.~'18.3.20.)

구분	결과	사유
행정심판 (18.10.22.)	기각	· 기 행정소송 판결 사유로 기각
행정소송 (20.7.1.)	일부 인용	· 대지 부분만 변상금 처분 취소(점용요율 50/1000→25/1000 조정), 하천·구거 부분은 유지 ※ 단, '묵시적 점용 허가 인정, 신의성실 위반 등' 사유는 기각됨

- (4차 변상금) '21.5월 부과, 1,250백만원 ⇨ 납부 1,250백만원(예비비, '21.5.31)
 - 대지 : 1,198백만원('15.9.18.~'21.4.13.), 하천·구거 : 52백만원('18.3.21.~'21.4.16.)
 - ※ 기획재정부로 소유권 이전일('21.7.1.)까지 추가 변상금 부과 예정('21.9., 279백만원)